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붙임 2]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③ 지원기준

- ①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②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times 100\%) + (300 \times 50\%) = 450\text{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times 100\%) + (300 \times 50\%) + (300 \times 30\%) = 540\text{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times 100\%) + (300 \times 50\%) + (300 \times 30\%) + (300 \times 20\%) = 600\text{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일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대 상	지급 시기
행정정보 및 既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 23일~
행정정보 및 既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 25일~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 28일~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 28일~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3. 7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 집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① 신속지급 :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② **확인지급** :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③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①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②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③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③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온라인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①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②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③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3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4. 절차 · 신청방법

1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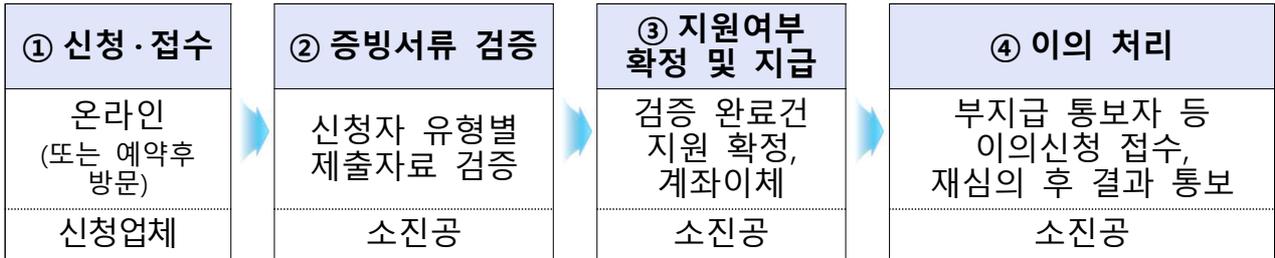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② 확인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확인지급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2. 28. ~ 3. 18.)

신청 대상	<p>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③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p>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p>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②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③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붙임 1

소기업 개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지원대상 판단기준

□ 기업 규모 판단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기업규모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또는 '20년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및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부재시 지원 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 1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 ①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그룹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② 그 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에 한정)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1년 신고매출액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1년 신고매출액
'19.12월~'20.11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1년 신고매출액
	'21.7~10월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	'21.7~10월	'21.11월
		'21.12월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참고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

필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i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ii

<제3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iii

해당 시

<제4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iv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제1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접수번호¹⁾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

구분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영업시간 제한 <input type="checkbox"/> 그 외	신청 금액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영업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영업 중 <input type="checkbox"/> 휴업 중 <input type="checkbox"/> 폐업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지점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대표자)	() -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종업원 수)		업태 / 종목 (실제 영위업종)	/	
	확인 사항 (필수 체크)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신청 <input type="checkbox"/> 타인 명의 계좌 신청(가족 또는 직원)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협 등) <input type="checkbox"/> '22년 1차 추경에 포함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input type="checkbox"/>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유 <input type="checkbox"/> 업종 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입금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_____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4.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제2호 서식) 5.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해당시	1.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①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③(타인 명의) 통장사본 2. (공동대표인 경우)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3. (비영리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협 등인 경우)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등 4. ('21.12.15.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①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②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6. ('22년 1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환 확인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7.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혹은 사업장현황신고서)

1) 접수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제2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① (필수)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2차 방역지원금(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연계 응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② (필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③ (필수)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은 2차 방역지원금(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나이스신용평가,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제공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연계 응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④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차 방역지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①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법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input type="checkbox"/>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_____)		
②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③ 위임내용			
'2차 방역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2차 방역지원금 관련 업무	○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input type="checkbox"/>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2차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